



『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

현황 및 문제점



심뇌혈관질환 법령 주요내용



향후 계획

목 차



현황 및 문제점



심뇌혈관질환 법령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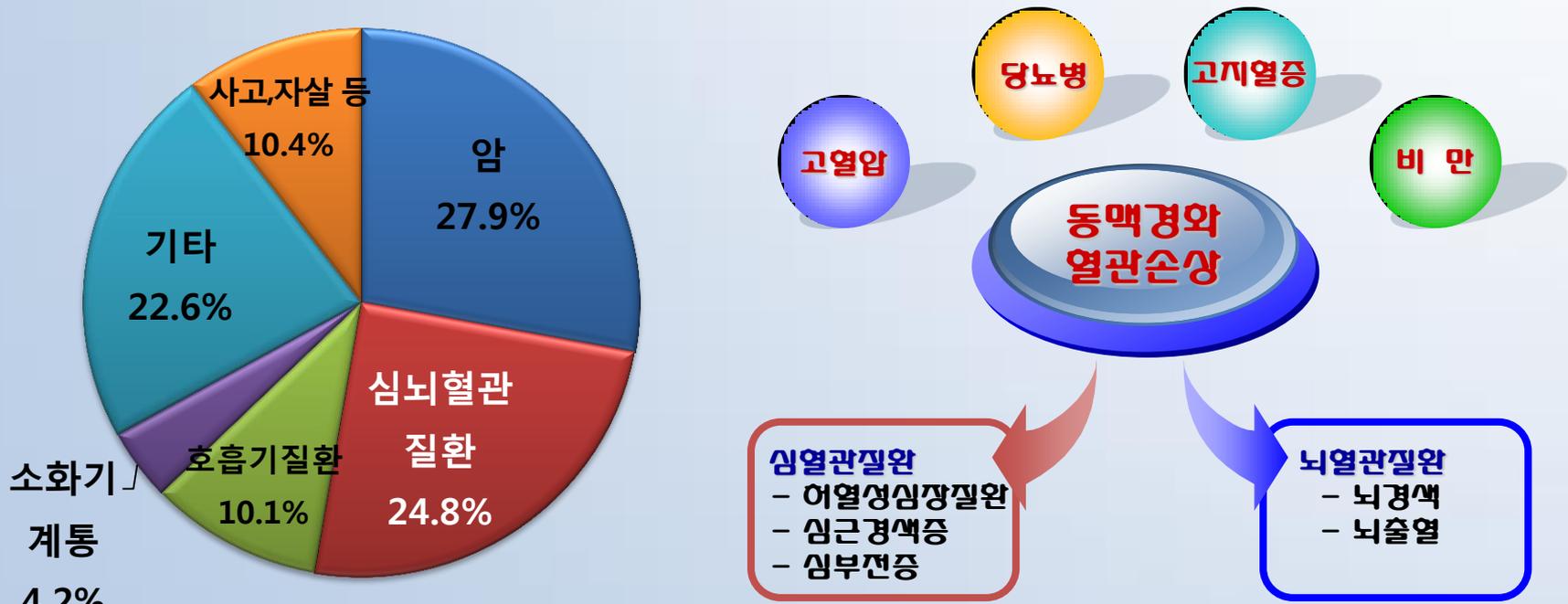


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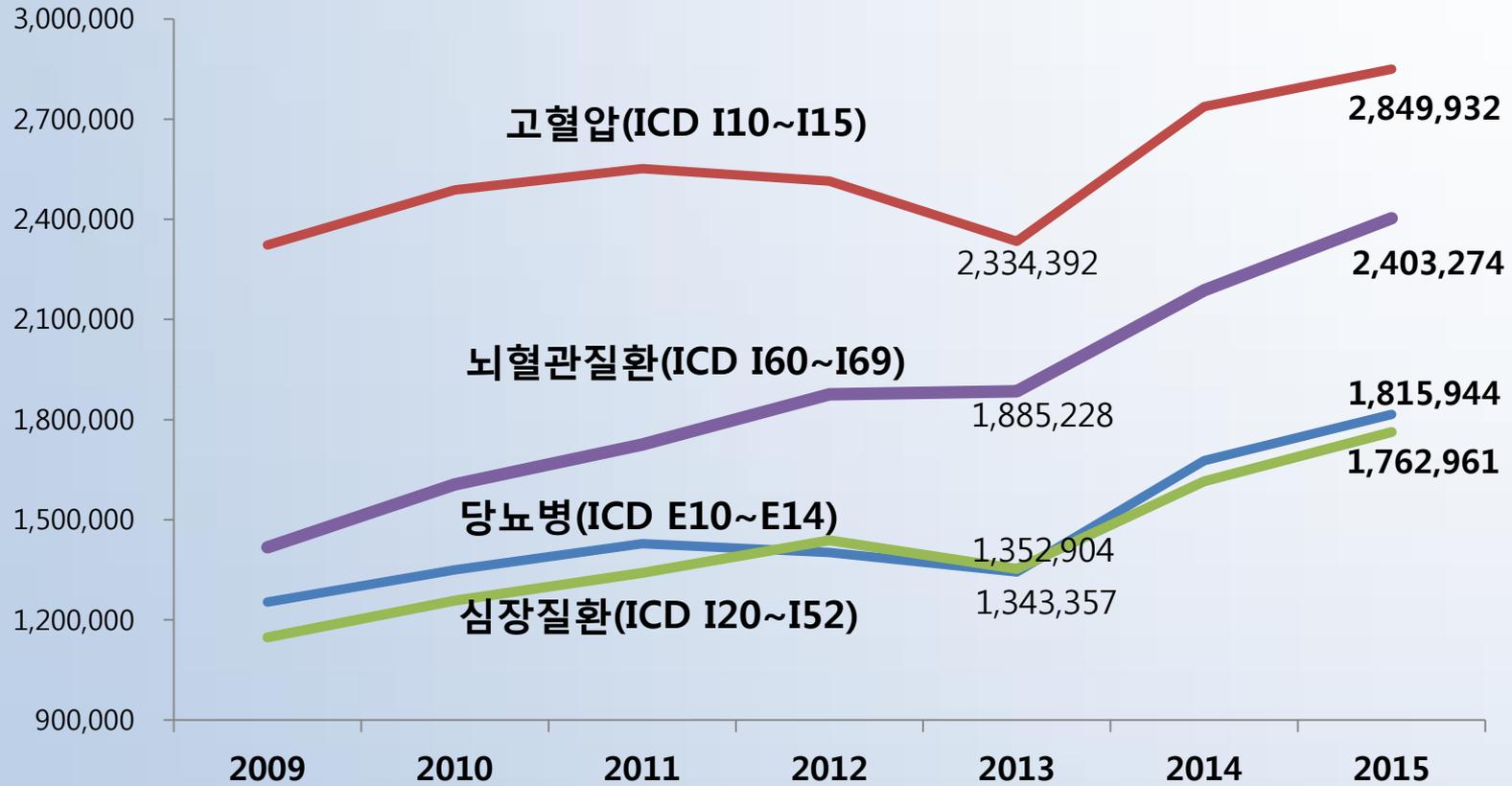
□ 배경

- 심뇌혈관질환 은 암에 이은 주된 사망원인(사망원인 2위)
- 심뇌혈관질환 정의

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(심근경색증, 협심증)과 심장정지, 뇌졸중(뇌출혈, 뇌경색) 등 뇌혈관질환, 고혈압, 당뇨병 선행질환을 총칭



- 고혈압·당뇨병·심뇌혈관질환 인한 의료비 계속 상승



* ICD : 질병분류코드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)

-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**11조 9,231억원('12년)**

* 자료원: 건강보험정책연구원,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, 2014

- 지난 5년간 65세이상 인구는 4.3% 증가한 반면, 65세이상 심혈관질환자는 연평균 8.6%로 더 증가

구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연평균 증가율
인구수(명, %)						
전체	50,515,666	50,734,284	50,948,272	51,141,463	51,327,916	0.40
≥65세	5,506,352	5,700,972	5,980,060	6,250,986	6,520,607	4.32
≥75세	2,021,778	2,162,576	2,305,784	2,462,061	2,640,340	6.90
심혈관질환수(명, %)						
전체	790,389	873,409	937,888	963,217	1,003,375	6.15
≥65세	389,488	440,453	484,058	509,984	542,213	8.62
≥75세	161,217	188,435	211,094	229,036	252,429	11.86

- 주 : 심혈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주상병이 심장질환으로 정의 (심장수술 흉부외과 전문의 회의 통해 다빈도 상병기준)
- 자료원 : 국가통계포털(인구)

- 향후 65세 인구수는 '30년, '40년에는 '14년 비해 각각 99.6%, 160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(장래추계인구수)

❖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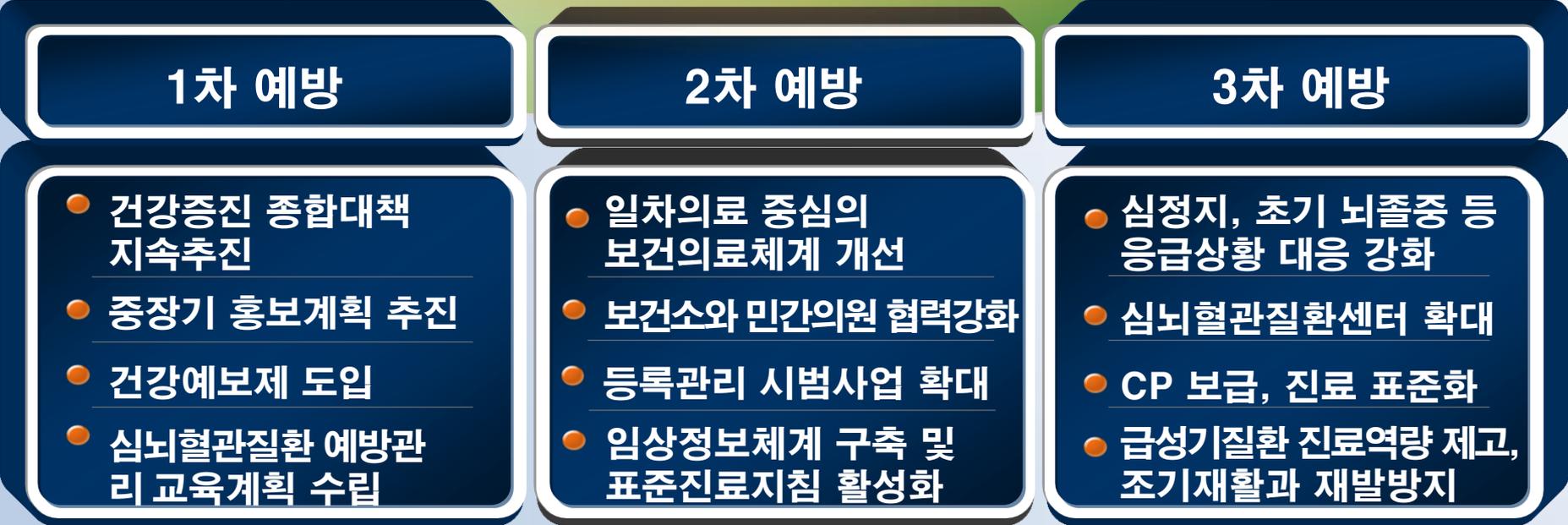
• 제1차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(2006)



비 전 **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보장
미래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**

목표

심근경색증 · 뇌졸중의 발생, 사망, 장애 감소
고혈압 · 당뇨병의 지속치료를 등 관리수준 향상



인프라 구축 : 만성질환관리법 등 법령 및 제도 정비, 주요 질환 감시체계 구축,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투자 확대

☐ 주요 추진사업

❖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 운영(질병관리본부)

- 시도,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자문 및 지원
 - 고혈압, 당뇨병 교육컨텐츠 개발, 보건소 실무자 대상 환자 교육 상담 역량 교육과정 등 운영
- 중앙단위 기술자문 및 지원
 -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국캠페인(9월, 집중홍보주간) 지원
 - 만성질환관리(NCD) 포럼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 -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실행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자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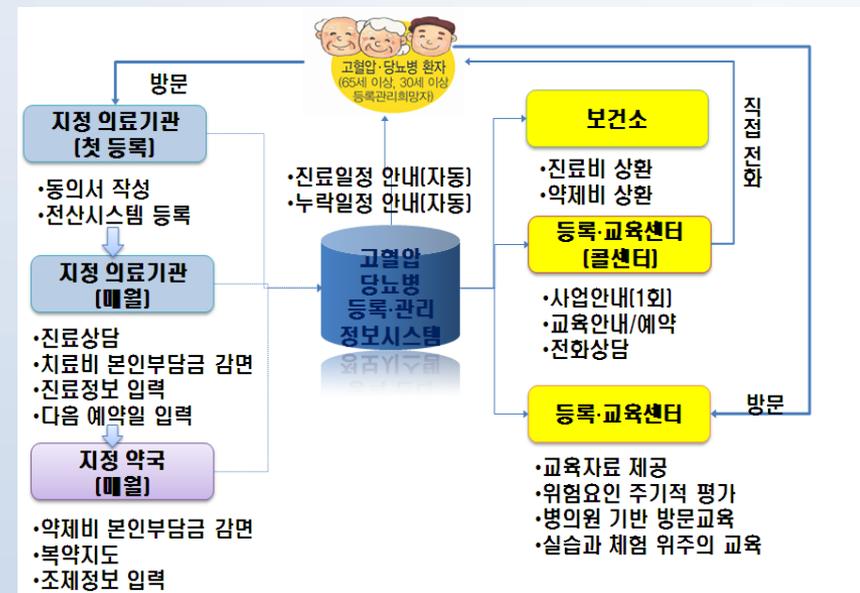
➤ 고혈압 당뇨병 등록·관리 사업(질병관리본부)

- 지역사회 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
- 환자의 약물 지속 치료율 제고를 위한 환자인센티브 제공 모형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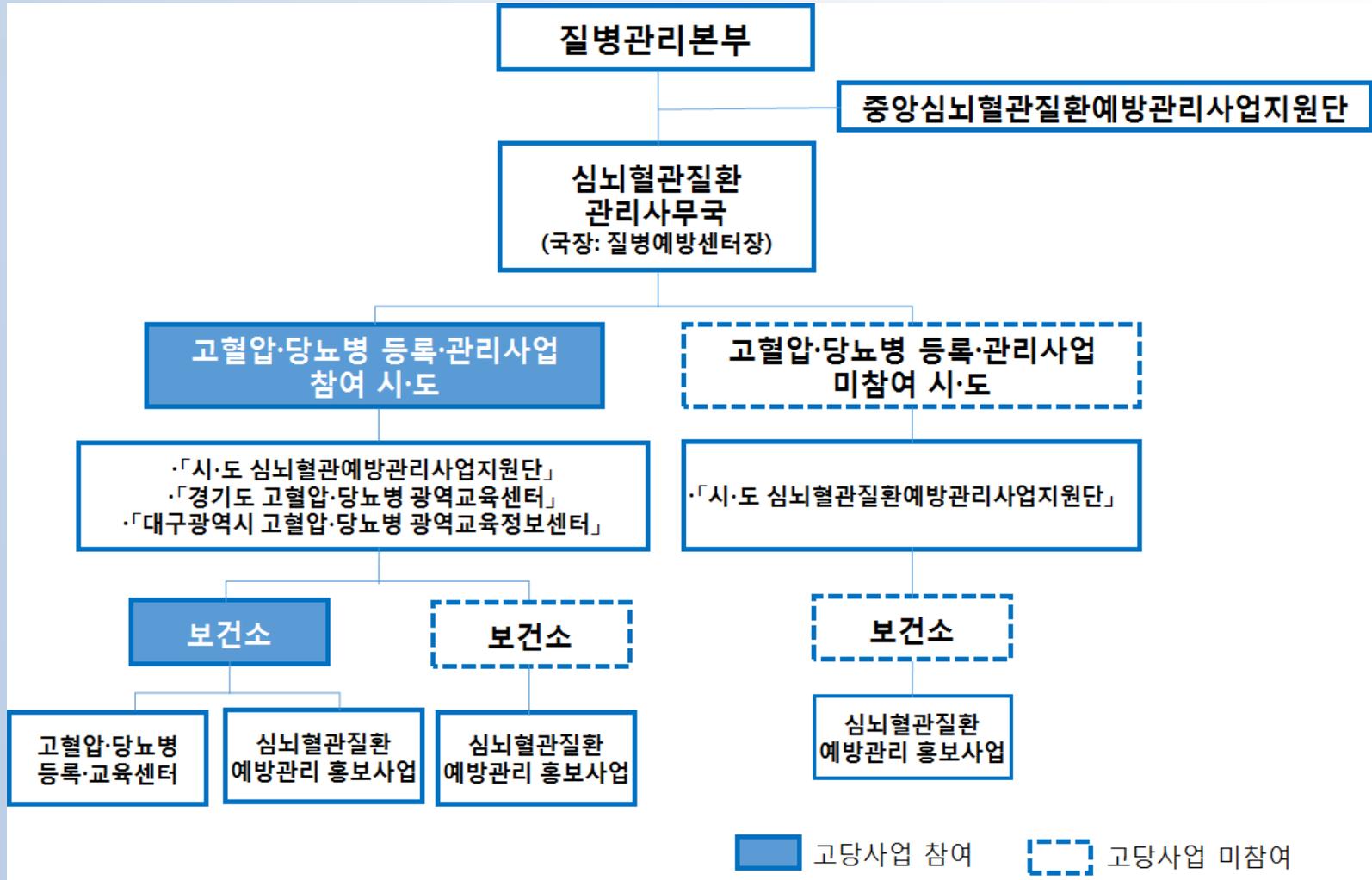
- 협력단체(참여기관): 지역사회 고혈압·당뇨병 진료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
- 등록관리 대상 :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

- 등록관리 서비스

- 65세 이상 환자 인센티브: 42,000원/연(진료비, 약제비 등)
- 병의원 치료일정(예약일) 안내,
- 누락일정 안내 등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리마인더 서비스
-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질병관리교육



조직체계



❖ 급성기 환자 관리체계 구축

- 전국 11개 대학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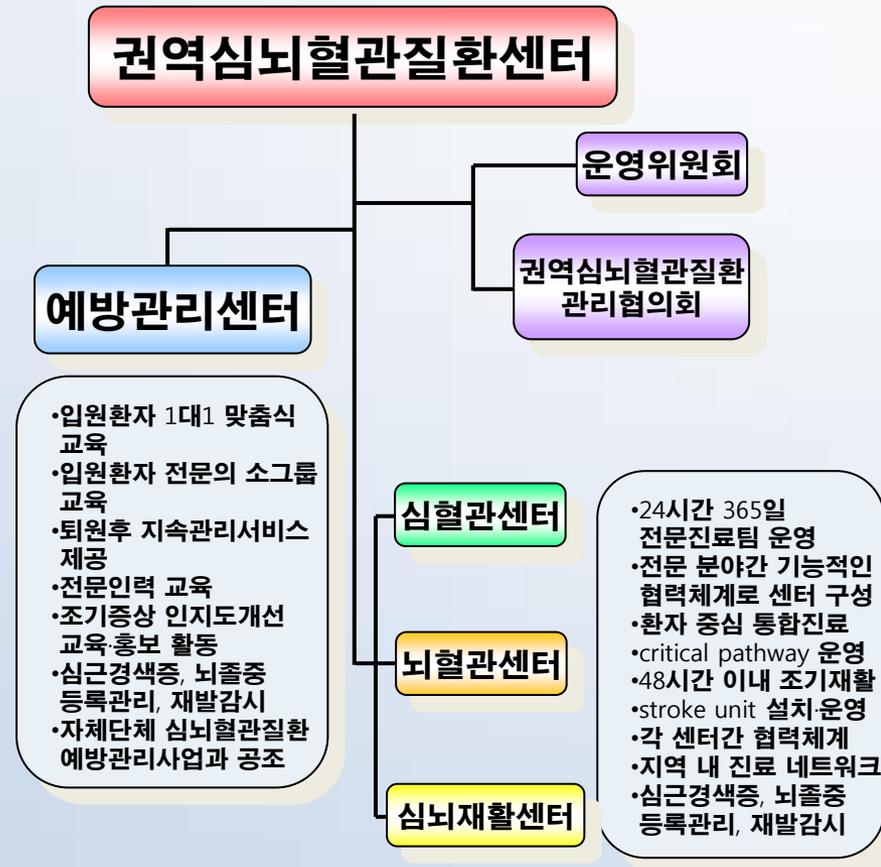
○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

✓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집중진료기반 구축

-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상주당직체계 운영
- 주임상경로(CP) 개발, 지속적 모니터링
- 뇌졸중집중치료실(SU), 심혈관계중환자실(CCU) 운영
- 뇌졸중 조기재활 및 심장재활 시행

✓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증추역할 수행

- 심뇌혈관질환 입·퇴원 환자 전문교육과정운영
- 퇴원환자 F/U(추구관리) 서비스 제공
-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운영
- 지역사회 교육·홍보(조기증상 인지도 향상 사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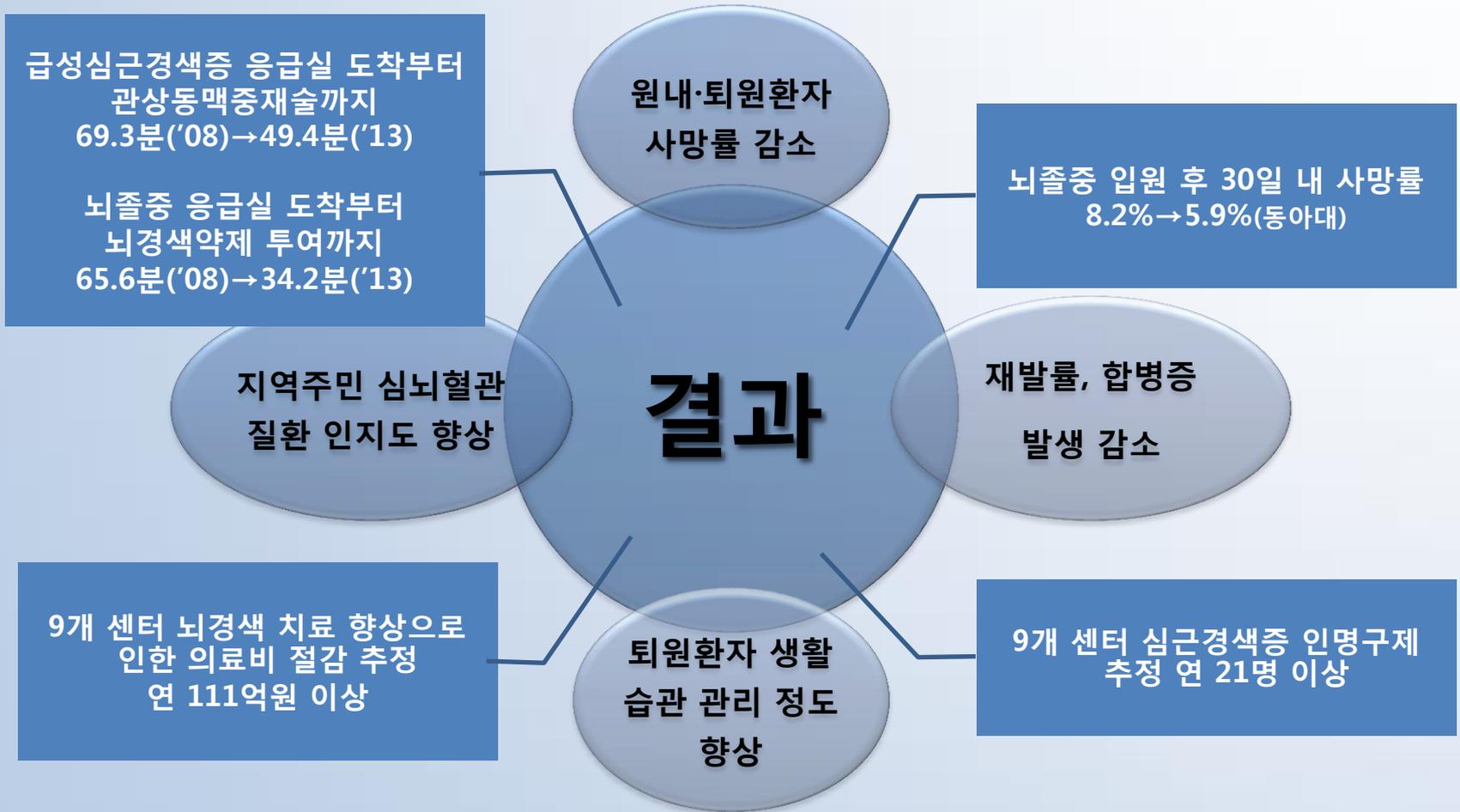
사업대상

■ 지방대학교 병원 11개소 선정



권역	설치년도
강원대	2008년
경북대	
제주대	
경상대	2009년
전남대	
충북대	
동아대	2010년
원광대	
충남대	
분당서울대	2012년
인하대	

• 성과 → 임상진료지표 개선



☐ 문제점



목 차

I

현황 및 문제점

II

심뇌혈관질환 법령 주요내용

III

향후 계획

❖ 심뇌혈관질환법 주요 내용

“심뇌혈관질환”에 대한 정의 (제2조)

- ‘심뇌혈관질환’이란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정의
-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, 심장정지,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, 고혈압, 당뇨병,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

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(제4조)

- 매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
- 시·도지사는 그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

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(제5조),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(제6조)

- (연구사업) 심뇌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을 시행
- (조사통계사업) 심뇌등록통계사업, 코호트 조사 등 발생위험요인 분석과 정책근거 마련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, 재발률, 사망률 등을 파악

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(제7조)

- 심뇌예방을 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,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
- 각종 정보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,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·홍보, 상담인력 양성 등

역학조사 (제8조)

-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
- 역학조사의 시기·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(제9조)

-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
- 환자 진료 및 재활, 심뇌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, 심뇌 관련 예방, 진료 및 재활 등 조사·연구,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- 지정기준·방법·절차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

❖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사항

주요 내용	시행령	시행규칙
제1조(목적)		
제2조(정의)		그밖에 정하는 질환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		
제4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	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	그밖에 심뇌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5조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		
제6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		자료제출·요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
제7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		시행에 필요한 사항
제8조(역학조사)	시기·방법·내용 등 필요사항	
제9조(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)		지정기준·방법·절차 및 취소절차 등 필요사항
제10조(비용의 지원)		
제11조(지도·감독 등)		
제12조(청문)		
제13조(위임 및 위탁)	법인·단체에 위탁 업무	

❖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1)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제2조(정의)		<p>제2조(심뇌혈관질환의 종류)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 뇌혈관질환으로 ①심부전증, ②부정맥, ③뇌동맥류 추가</p>
제4조 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 계획의 수립)	<p>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 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시·도지사에게 통보 ②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세부집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</p>	
	<p>제3조 (심뇌혈관질환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 가를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집행계획 수립 / 평가지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차년도 세부집행계획과 당해년도 세부집행 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복지부장 관에게 제출 ③ 세부집행계획 또는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완 또는 개선할 것을 요청</p>	

❖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2)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제5조 (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)		제3조(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) 연구사업 지원 및 자문을 위해 연구기획단을 구성하고 (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)
제6조 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		제4조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)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기관에게 심뇌혈관질환 자의 진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·사용 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
제7조 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		제5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의 설치 운영) 예방사업을 집중적·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지원단을, 시·도지사는 시·도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지원단을 설치 - (중앙사업지원단 업무) 국가가 행하는 심뇌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, 관리 지침 개발, 심뇌관리 관련 정보수집 등 - (시도사업지원단 업무) 시도에서 행하는 심뇌 예방사업에 대한 기획 및 기술 지원, 시군구 예방관리사업 인력 교육 등

❖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3)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제8조 (역학조사)</p>	<p>제4조(역학조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내용) 심뇌혈관질환 발생원인, 심뇌혈관질환 내용 및 특성,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따른 사회·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등 - (시기) 특정 지역·계층·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또는 대응이 필요한 경우 - (방법)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 원칙 - (운영)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관계 연구기관,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	<p>제6조(역학조사반원의 증표)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</p>
<p>제9조 (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)</p>	<p>제5조(지정취소의 요건)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</p>	<p>제7조(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, 방법 및 절차 등)</p> <p>주민의 수, 주민의 생활권,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정·운영하고 지정받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중 1개 기관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 관련 업무지원 - 심뇌조사통계사업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제공 업무 -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교육

❖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4)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제13조 (위임 및 위탁)</p>	<p>제6조(위임 및 위탁) - (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) 심뇌혈관질환연구·조사통계사업·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,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</p>	
	<p>제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연구사업·예방사업·역학조사에 관한 사무,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에 관한 사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-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조사통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</p>	

❖ 기대효과

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

-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 목표 및 방향, 추진 계획 및 방법 등을 설정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**연구/예방/치료 등 사업 수행**

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

-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내용과 지정 기준,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**기존 성과 확산과 중앙센터 설치 등 사업 발전 토대 구축**

사업체계 개편으로 사업 효율 향상

- 하위법령 제정과 연계하여,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간 **중복 요소를 파악하고,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향후 방향 모색**

목 차

I

현황 및 문제점

II

심뇌혈관질환 법령 주요 내용

III

향후 계획

□ 향후 계획

- 제1차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 수립 연구 계약체결 (4월)
 - 종합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전문가 TF 위촉(4월)
- 심뇌혈관질환법 및 하위법령 시행 (5.30)
- '18년 예산 편성(6~8월)
 - 신규 수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
-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간 보고 (6월)
- 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(10월) 및 심뇌종합계획 발표 (11월)

감사합니다



보건복지부